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기간)

- 제1항.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항.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 제1호.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제2호.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3호.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제1호.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제2호.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제3호.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2조 (준수사항)

- 제1항.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 제2항.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3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0% 부담		
	경감대상자		6% 부담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원	150분 이상	50,640원
60분 이상	25,320원	180분 이상	57,020원
90분 이상	34,120원	210분 이상	63,530원
120분 이상	43,430원	240분 이상	70,080원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60분이상)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40분이상)	목욕차량을 이용 (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 (가정내 목욕제공)
50,100원	40,080	88,990원	80,230원

제14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제1항.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제1호.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가사및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인지활동 지원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가정내 이동욕조를 이용한
40~60분 목욕, 이동욕조를 이용한 60분 목욕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제2호.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3]의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3호. 방문요양은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2항. 교통비 가산

제1호.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제1호.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2호.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3호.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제4호.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항. 신원인수인의 의무

제1호.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2호.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3호.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4호.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5호.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제2항.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제3항.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제4항.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제5항.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6항.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항.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항.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제9항.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1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기관,대상자(또는 보호자),서비스 제공자 3자간의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2항. 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제3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후에 서면으로 기록한다.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3호.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4호.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